

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 홈페이지 공개

■ 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→ 채무조정 요청권이란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
□ 요청대상

■ 대상자

-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
■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능한 경우

-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-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-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
■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

-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-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-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
□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

■ 요청방법

- 영업점 신청 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
- 비대면 신청 : 온라인/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

■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

1. 채무조정요청서
2. 채무조정안*
3.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
4. 개인(신용)정보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5.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(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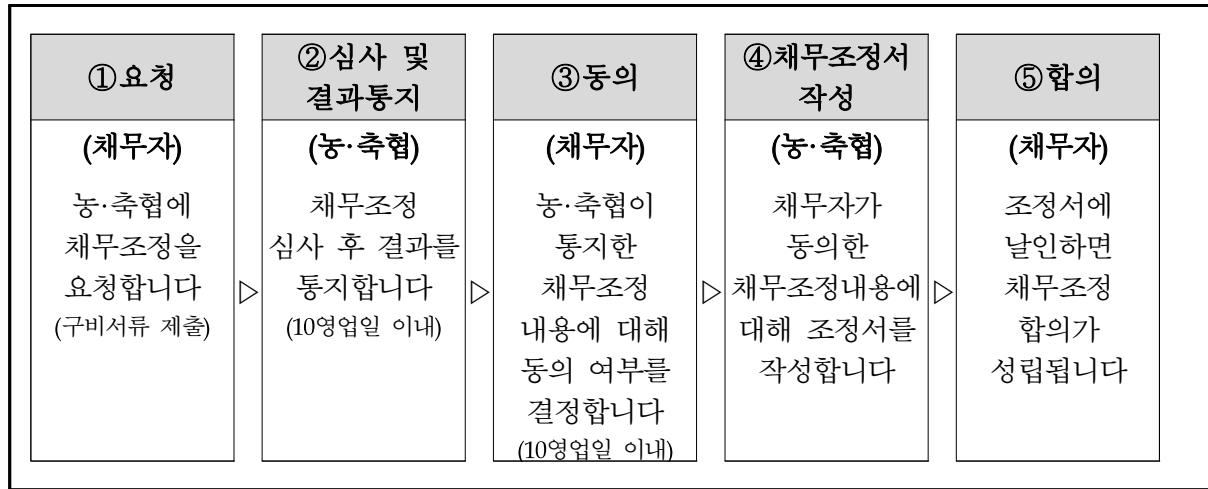
*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

□ 채무조정 내용

채무조정 내용(예시)

상환유예	상환기간 연장	이자율조정	채무감면
▶ 최장 1년(6개월단위) ▶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	▶ 최장 10년 이내 (대환 또는 만기연장)	▶ 약정이자율의 30%~70% 범위에서 인하 (하한 3.25%)	▶ 원금 0%~30% 감면 ▶ 연체이자, 이자 감면

□ 채무조정 절차



□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회생

-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■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-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-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채무조정 요청서

☐ 신청인 기본사항

성명	생년월일	연락처	주소

☐ 채무조정 요청대상

본·지점	계좌번호	대출일자	잔액(원)

☐ 채무조정 요청사유

실직	폐업	질병 및 사고	소득 감소
☐	☐	☐	☐
기타			
☐ ()			

☐ 채무조정 요청 관련 안내사항

■ 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◇ 채무조정 요청권이란,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”이라 한다)에 따라 채무 연체 발생시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
◇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합니다.

1.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2.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이 진행 중인 경우
3.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
◇ 「개인채무자보호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1.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2.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3.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
◇ 채무조정 요청 결과는 요청 후 채권금융회사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에 안내되며,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귀하가 동의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채무조정 절차가 종료됩니다.

◇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◇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된 후 3개월 이상 미납시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됩니다.

◇ 본 조합 채무뿐만 아니라 타 금융회사 채무 등 다중 채무로 인해 상황이 어려운 경우,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상담을 권해드립니다.

◇ 채무조정 요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
1.채무조정요청서 2.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3.채무조정안 4.변제능력 입증자료

※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으며, 상기 서류 외에 심사 중 추가 서류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※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, 즉시 서안동농협(☎054-858-7101)로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본인은 상기 항목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고, 채무조정 요청에 따른 안내사항을 숙지하였습니다. 이에 귀 사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본인 : _____ (인)

채무조정안(채무자용)

☐ 신청인 기본정보

(단위 : 원)

성명	생년월일	연락처	주소	
직업	월평균 소득(A)	월평균 생계비(B)	금융비용(C) (타 대출 상환액)	가용소득 (D)

※ 월평균 소득(A)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소득 등의 합산을 말합니다.
월평균 생계비(B)는 한 달 동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합니다.

☐ 채무조정 요청대상

본·지점	계좌번호	대출일자	잔액(원)
(주)원베스트대부			

☐ 채무조정 요청사항

(단위 : 원)

구분		조정 내용	
만기 연장	(Y / N)	희망 유예기간(최대1년)	
		개월	
상환 유예	(Y / N)	희망 변제기간(최대1년)	
		개월	
이자율 인하	(Y / N)	이자율	
		채무조정 전	채무조정 후
		%	%
이자 일부 유예 * 취약차주지원만 해당	(Y / N)	유예기간	유예비율
		개월	%
이자 감면 * 취약차주지원 선택 불가	(Y / N)	☐ 이자 감면 (워크아웃)	☐ 연체이자 감면 (프리워크아웃)
원금 감면 * 워크아웃만 해당	(Y / N)	원금	
		채무조정 전	채무조정 후
기타 사항	(Y / N)		

년 월 일

신청인 본인 : (인)